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서

제출연월일 : 2024. 10.

제 출 자 : 대 통 령

재의요구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9월 19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별지에 기재된 이유로 그 내용대로 공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려는 것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서

2024년 9월 19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 특별검사 법률안”이라 함)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정부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반되고, 특별검사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위반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가 어렵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2024년 5월 21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였고, 같은 법률안은 2024년 5월 28일 국회에서 재의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4일 제22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제21대 국회에서 위헌 사유로 지적된 사항들이 전혀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고, 특별검사의 임명간주 규정,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 특별검사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 등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규정들이 추가된 채 의결되었기에 2024년 7월 9일 정부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였고, 같은 법률안은 2024년 7월 25일 국회에서 재의결 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제21대와 제22대 국회에서의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숙의를 거치거나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노력도 없이 그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또다시 의결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특별검사 법률안에서는 특별검사보의 임명간주 규정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 추가되고, 수사 규모 및 기간이 대폭 확대되는 등 그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형태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정부가 종전 특별검사 법률안들의 위헌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두 차례나 재의를 요구하였고, 국회의 재의결 결과 해당 법률안들이 모두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특별검사 법률안과 같이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률안을 또다시 정부에 이송하는 것은 이 특별검사 법률안의 목적이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라기 보다는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 및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특별검사 법률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특별검사 법률안의 특별검사 임명절차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됩니다.

- 권력분립 원칙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의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바, 우리 헌법 역시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권(제40조), 행정권(제66조제4항), 사법권(제101조제1항)으로 분할하고 이를 조직상으로 분리·독립된 국가기관인 국회(제3장), 정부(제4장), 법원(제5장)에 나누어 맡기고 있습니다.
-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는 행정작용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인 법무부장관이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검찰사무를 관장하며, 이를 위해 그 소속으로 검찰청을 두고 있습니다(「정부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항).¹⁾
- 특별검사 제도는 이와 같이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

1) 헌법재판소도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1. 28. 2020헌마264, 681 결정).

게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그 본질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 제도는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국회 내 심도 있는 숙의 절차 내지는 수사·소추권을 행사하는 행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입되어 왔고, 이는 권력분립 원칙을 엄두에 둔 헌법 관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헌법이 정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르면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도입된 특별검사 제도라고 할지라도 수사·소추권을 담당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²⁾
- 특히,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정권의 담당자로서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³⁾ 입법부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특별검사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⁴⁾

2) 앞서 언급한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 681 사건에서도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공수처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3) 미국의 경우 헌법상 의회가 연방 공직을 창설하고, 대통령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 주요공무원(Primary officer)을 임명하며, 하위공무원(Inferior officer) 임명의 경우에는 상원의 인준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미국 헌법 제2조제2항2절). 이와 같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미국 헌법 규정은 ‘공무원 임명권은 그 권한의 성질상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고, 만약 의회에 임명권을 부여할 경우 의원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무원 임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헌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것입니다.

4)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Independent Counsel)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위 법률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Special Counsel)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해임 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하는 규정⁵⁾을 두고 있는바, 수사·소추권을 담당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합니다.
- 나아가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야당이 대법원장으로부터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아 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에게 무한한 ‘비토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결국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들어맞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임명된 특별검사의 공정성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5) 이 특별검사 법률안 제3조에서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아닌 정당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아닌 정당의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합니다.

- 그 뿐만 아니라, 야당이 이러한 ‘비토권’ 행사 끝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그대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하더라도, 결국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대법원 소속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되고, 향후 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특별검사를 추천한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⁶⁾
- 한편,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특별검사보 임명에 관한 규정도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됩니다.⁷⁾
- 즉,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사실상 야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그 중 4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보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보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보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6) 2005년 7월 27일 **최종영 전 대법원장**은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서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은 삼권분립 원칙이나 재판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고, 2008년 1월 3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 추천 당시 “**향후 비슷한 사례에서 선례로 적용될까봐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7)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법재판소 2019. 2. 28. 2017헌바196 결정)에서 “두 야당은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임명에 있어서의 최종적 결정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안 제6조제7항 및 제8조제5항)하고 있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와 동일한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합니다.
- 「검찰청법」상 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제4조제3항)가 있는바,⁸⁾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특별검사 역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이 특별검사 법률안 제5조에서도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별검사 법률안에 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 또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에만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이 특별검

8)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한 헌법 제7조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사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간주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어, 사실상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또한 현행 사법시스템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인·고발인이 수사·재판을 담당할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특별검사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자 2명 모두에 대한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에만 부여되어 있는바, 수사대상 중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안 제2조제1항제2호)은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9월에, 조국혁신당이 2024년 6월에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사건(안 제2조제1항제4호)과 이와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안 제2조제1항제5호)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2024년 3월에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 이처럼 이 특별검사 법률안의 주요 수사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사실상 고발인이 수사 담당자 및 수사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 결국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거대 야당이 구체적 근거 없는 의혹만으로 대통령 등을 고발한 후, 입법권을 통해 자신들이 고발한 사안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야당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한 채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다음, 자신들이 고발한 사건을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3.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앞서 실시한 바와 같이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성격을 지닌 제도로서, 우리 헌정사에서 13차례만 시행되었을 정도로 매우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 이와 같이 특별검사 제도는 그 본질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내재적 한계 때문에, 본질적으로 기존 수사기관인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그런데 이 특별검사 법률안의 수사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안 제2조제1항제1호)은 최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전

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안 제2조제1항제2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사건(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안 제2조제1항제5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안 제2조제1항제6호)은 공수처가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 중이며 공수처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중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중복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이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이 사실상 임명한 특별검사를 통해 의도한 수사 결과를 내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 처리 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 기구인바,⁹⁾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

9)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에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 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과 이에 관한 반성적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은 우리 형사법 체계에 반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됩니다.

- 현행 형사법 체계 및 기소독점주의에 의하면 공소취소는 검사와 군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¹⁰⁾
- 그런데 이 특별검사 법률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에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하고 있는데, 이 특별검사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특별검사는 수사 대상 사건이 재판진행 중인 경우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의 결정을 포함하여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박정훈 전(前)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형법」상 항명죄 등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 편의주에 따라 기소 후에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의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승계 규정에 따라 기소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도 공소취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 그러나 군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니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특별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그 전례도 없습니다.
- 앞서 설명한 권력분립 원칙에 비춰 보아도 수사·소추권을 행사하는 정부의 수사기관에서 이미 공소제기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사실상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가 공소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여 입법부가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더구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취소 후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만 재기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이와 같이 이 특별검사 법률안의 특별검사에 대한 공소취소권 부여 규정은, 특별검사에게 행정권의 담당자로서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휘·감독체계 내에 있는 정부의 의사결정을 취소하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¹¹⁾

11)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공수처도 스스로의 권한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할 뿐 관련한 사건으로서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5. 이 특별검사 법률안의 수사대상과 벌칙규정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 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이 특별검사 법률안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요구되는 원칙이며, 죄형법정주의에도 명확성의 요청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해석입니다.¹²⁾
- 따라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기간, 규모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권한과 의무를 준용하는 특별검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벌칙조항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 특별검사 법률안 역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특별검사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는 바, 대통령의 지휘감독체계에서 벗어난 제3의 기관인 공수처가 대통령의 지휘감독체계 내에서 정부의 권한 행사로 귀속되는 검사 또는 군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부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12)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7 결정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검사 법률안 제2조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단지 의혹 수준에서 제기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을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나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제7호에서는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수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에서 “방해행위”는 그 의미가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 불응, 정당한 반론권 행사도 특별검사가 “방해행위”로 해석할 경우에는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특별검사의 체포, 구속, 압수수색, 공소제기 등의 과정에서 자의적인 법집행이 우려됩니다.
- 특히, 이 특별검사 법률안의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의 경우, “구명 부탁”, “불법 로비”라는 용어는 다른 법률에는 없는 불명확한 용어로서 특별검사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수사대상 규정은 구체적인 수사 단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 나아가, 위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 규정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직권남용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안으로, 사실상 우리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별건 수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이 특별검사 법률안의 수사대상 규정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되는 것은 비단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특별검사 법률안이 일반 국민들을 수범자로 하는 벌칙조항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즉, 이 특별검사 법률안 제20조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 가중처벌 규정을 통해 보호하는 법익인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중 가장 주요한 직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안 제6조제1항제1호)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특별검사 법률안의 수사대상을 규정한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은 특별검사 직무수행 방해에 관한 벌칙규정과 결부되어 구성요건의 일부로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결국 이 특별검사 법률안 제2조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서 단지의혹 수준에서 제기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과 그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한 불분명한 표현으로 해석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불명확하고 모호한 수사대상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일반 국민이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이 특별검사 법률안으로 인한 사건관계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현저합니다.

- 이 특별검사 법률안에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바,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현저합니다.
-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불공정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및 특별검사 임명 절차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치편향적인 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농후한바, 그러한 특별검사의 수사 및 재판 절차 브리핑이 곧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7. 이 특별검사 법률안의 과도한 수사기간 및 수사인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도 상당합니다.

- 이 특별검사 법률안의 수사기간 및 수사인력이 과도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높습니다.
- 특별검사 제도는 특정 사안에 대해 한정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므로, 과잉수사로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수사기간과 수사인력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 그런데 헌정사에서 시행된 13번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중 가장 길었던 특별검사¹³⁾의 수사기간이 120일이었는데, 이 특별검사 법률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로서 수사기간이 역대 최장기간에 해당하고, 전례 없이 20일의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큼니다.
- 또한 이 특별검사 법률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은 최장 150

13)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제9조

일, 수사인력은 최대 155명인데, 수사대상이 15개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최장 100일, 수사인력이 최대 105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수사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수사인력도 지나치게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 한편, 이 특별검사 법률안 제9조제3항에서는 특별검사는 90일 동안의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 없이도 30일을 더 연장하여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야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휘·감독 없이 임의로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8. 이 특별검사 법률안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될 우려가 높습니다.

-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수사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수사인력도 지나치게 많으며, 과거 특별검사 도입으로 집행된 예산 등에 비춰 볼 때,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특별검사 법률안으로 소요될 예산을 약 124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통상 특별검사 법률의 집행에는 초기 추산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고, 수사대상 중 극히 일부라도 기소될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은 더욱 커져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가 막대한 액수에 이를 것이 염려됩니다.

- 참고로 100일의 수사기간과 105명의 수사인력으로 역대 최대규모였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도입으로 당시 153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된 점을 감안하면, 이 특별검사 법률안의 역대급 수사기간(150일)과 수사인력(155명)을 고려할 때 수백억 원의 혈세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9. 수사방해 금지, 직무수행 회피 규정은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규정의 금지행위인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의 의미가 모호하고 너무 포괄적인바, ① 출석 또는 자료제출 불응,

- ②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③ 예산·인력 등 행정적 지원 부족 등도 ‘수사 방해나 지장을 주는 행위’라고 주장될 여지도 있습니다.
- 그 뿐만 아니라, 수사방해 금지와 회피 의무의 주체로 규정된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가 피의자만을 의미하는지, 참고인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입건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등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회피 의무의 요건인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시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 또한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특별검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공수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 및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포괄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수사협조 및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검사의 징계절차 개시 요청권한은 특별검사의 요청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제3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징계절차 개시 요청 권한까지 인정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더 나아가 특별검사가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결국 위 규정들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악용하여 그 위반을 근거로 탄핵·해임건의·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10. 결 론

- 이와 같이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제21대와 제22대 국회에서의 재의 요구 당시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국회에서 숙의를 거치거나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정부로 이송된 결과 종전에 정부가 지적하였던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되었는바,
 - (1) 특별검사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제3자 추천의 외관만 갖추었을 뿐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에만 부여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둬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대한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2) 이 특별검사 법률안의 주요 수사대상을 이미 공수처에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3) 검찰과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반하고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도 반합니다.

- 나아가 (4) 특별검사에게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현행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5) 수사 대상과 벌칙규정의 불명확성은 우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6)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특별검사의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통해 특별검사 제도가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되어 수사대상자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고, (7) 수사기간과 수사인력이 과도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와 불필요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8) 수사대상 공직자의 특별검사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여 추후 탄핵·해임건의·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수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라 할 것인데, 이 특별검사 법률안의 경우 정해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라는 과정을 만들어 내는 도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기도 하지만, ① 위헌적 법률, ② 집행불가능한 법률, ③ 국익에 반하는 법률, ④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의 경우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야만 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이 특별검사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법률 제 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

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3. 제2호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
4.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5. 제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6.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

7.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장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장에게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법원장은 서면 추천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아닌 정당의 교섭단체(이하 “교섭단체”라 한다)와 비교섭단체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 명단을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명단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각각 1명을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국회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국회의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특별검사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협의하여 명단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대법원장으로부터 새로운 특별검사후보자 명단을 송부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5항 본문에 따라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국회의장은 추천받은 2명을 제2항의 첨부 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특별검사임명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⑧ 대통령이 제7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공소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한다)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60명 이내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전체 파견인원의 10분의 1 이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8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제12조에 따라 언론브리핑의 대상이 되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공표하거나

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의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① 특별검사는 국회가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

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7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 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

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7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